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C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Non-Performance and Legal Cases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CISG, PICC and PECL-

저자
(Authors) 심종석, 서민교
 Chong-Seok Shim, Min-Kyo Seo

출처
(Source) [무역학회지 33\(5\)](#), 2008.11, 253-274 (22 pages)
 [Korea trade review 33\(5\)](#), 2008.11, 253-274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무역학회](#)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532122>

APA Style 심종석, 서민교 (2008).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3(5), 253-274.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C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Non-Performance and Legal Cases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CISG, PICC and PECL -

심 중 석** Chong-Seok Shim

서 민 교*** Min-Kyo Seo

< 목 차 >

I. 서 론

II. 국제계약법규범하에서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III. 계약불이행에 관한 적용사례 분석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주 제 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 국제상사계약에관한일반원칙,
유럽계약법원칙, 계약위반, 불이행, 구제수단

* 본 논문은 한국무역학회 주관 「2008년 무역학자 전국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당시 학술발표에 있어 유익한 조언과 평론을 제시해주신 건국대 송희영 교수님과 배재대 안병만
교수님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주저자)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I. 서론

일반적으로 계약불이행은 법률관계를 형성한 계약당사자간 상호 의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사되지 않은 위법행위로 설명된다. 그런데 계약불이행은 그 유형·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상 국제사법 또는 법계 간 일정한 시각차가 존재하게 된다. 곧 대륙법계에서는 대개 계약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하고, 개별 법률효과로서 현실적 이행강제·손해배상청구권·추완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들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사실로 포괄하고, 그 법률효과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기 차별하여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상 당해 계약요건에 대한 상당한 의무위반의 존재를 계약위반의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불이행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계약불이행의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는 대륙법계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Farnsworth, 1998).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 및 유럽계약법원칙(PECL)을 중심으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그 적용사례를 통해 참조할 수 있는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¹⁾ 당해 결과로부터 국제상사계약 실무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이에 당해 적용사례의 평석을 결부하여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후속연구에 일조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국제계약법규범하에서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국제계약법규범은 모두 계약불이행을 계약상 의무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로 통일하여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 CISG는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달리 PICC 및 PECL은 불이행(non-performance)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1) ① 이하 용어사용에 있어 기술 편의상 CISG, PICC 및 PECL을 함께 묶어 '국제계약법규범'으로 사용한다. ② 아울러 이하 '적용사례'라고 함은 달리 표현하지 않는 한, 판례 및 판정례를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둔다. 다만 개별사례에 대한 표현은 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렇지만 계약위반이나 불이행 모두 고의·과실에 기한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이행지체·이행불능을 포함하여 담보책임·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CISG에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당해 매매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불이행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CISG Art. 79(1)), 다만 개별규정 내에서 불이행 될 수 있는 매매계약 당사자간 주요 의무를 대칭적으로 편제해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곧 CISG에서는 계약상 모든 의무에 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termination)는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의 경우 허용되는데,²⁾ 여기서 중대한 계약위반은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당해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ly deprive)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로 특정된다. 이 경우 실질적 박탈이라고 함은 계약당사자 일방의 특정한 의무위반으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기대하였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것을 총칭한다.³⁾

법리적 논점에 따라 중대한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으로는 ‘불이익’(detriment), ‘실질적 박탈’(substantial deprive),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⁴⁾ ‘입증책임’(burden of proof)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Kritzer, 1989: Honnold, 1999) 그 판단은 오로지 개별 계약조항에 의한다.

CISG에서는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불이행을 당한 당사자’(aggrieved party)의 손실정도와 위반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경합하여, 이를 고려한 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고려의 결과가 계약당사자간 공히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제와 관련 CISG에서는, 우선 매도인의 계약해제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의 인도수령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에 의한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그 이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이전, 그리고 이외의 모든 위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때, 또는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으로 부터 추가기간 내에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는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해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⁵⁾

2) CISG Art. 25 및 이에 대한 관련규정으로서 Art. 49 및 Art. 64.

3) 단서조항으로서 CISG Art. 25.

4) 예견가능성의 입법론에 관한 상세는 김상용, 『비교계약법』, 서울: 법영사, 2002, pp.182-184.

5) CISG Art. 64 및 동 조항의 관련규정으로서 Art. 63(1).

또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대금지급에 관한 대가관계에서 계약목적물(subject matter with the contract)에 대한 인도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에 관한 위 규정내용에 준한다.⁶⁾

결국 CISG에서 불이행에 관한 계약해제권의 발생과 그 행사에 대한 제한요건은 그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상당하여야 하며,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도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함은 동일하나, 그 행사는 매수인이 부여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의 이행이 행사되지 아니하거나 인도거부를 선언한 경우에만 한정되고,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통해 행사되는 선언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⁷⁾

2.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

앞서 살핀 바와 같이 PICC에서는 CISG에서의 계약위반을 불이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어떠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자있는 이행 또는 지체된 이행을 포괄한다. 아울러 불이행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있음은 CISG의 경우와 같다(PICC Art. 7.1.1).

그렇지만 계약당사자간 동시이행이 전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당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이행을 보류할 수 있고, 달리 당사자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차순의 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당해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PICC Art. 7.1.3).

불이행에 대한 PICC상 계약해제 권리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내용에 따른 불이행이 CISG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불이행’(fundamental non-performance)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불이행의 판단기준을 CISG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CISG를 보충(gap-filling)하고 있다.

곧 PICC에 있어 불이행의 판단기준은 불이행된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계약상 중요한지의 여부, 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것인지의 여부,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불이행 당사자가 그 준비 또는 이행의 결과로서 불균형적인 손실을 입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며,⁸⁾ 이행기 전에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PICC Art. 7.3.3) 상대방의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할 것

6) CISG Art. 49 및 동 조항의 관련규정으로 Art. 47(1).

7) 이 경우 계약해제를 위한 통지부도달 위험은 불이행을 행사한 매도인 책임으로 귀속된다(CISG Art. 27).

8) 아울러 이행지체의 경우 불이행을 당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기간의 추가규정을 명시한 PICC Art. 7.1.5에 따라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규정을 두고 있다(PICC Art. 7.3.1(3)).

이라 합리적으로 믿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행의 적절한 보장(assurance)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보장이 상당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를 요구한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박정기, 1999).

요컨대 PICC에서는 당해 불이행이 면책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PICC 규정체계 내의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에 의한 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 의한 불이행’,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의 항변에 의한 이행유보’ 등의 면책사유에 한해서는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특히 PICC에서는 불이행과 관련하여 이행에 대한 권리에 하자있는 이행의 보수와 대체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PICC Art. 7.2.3). 아울러 금전지급의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현실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PICC Art. 7.2.1), 비금전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행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행 또는 집행이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부담이나 비용을 요하는 경우, 이행을 수령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이행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행이 완전히 개인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을 경우, 이행을 수령할 당사자가 불이행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당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PICC Art. 7.2.2).⁹⁾

3. 유럽계약법원칙(PECL)

PECL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행은 PIC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면책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지체 및 하자 있는 이행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상호협력의무’(duty to co-operate)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PECL Art. 1:202, Art. 1:301(4)).

PECL은 불이행의 효과에 관하여 구성체계상 ‘불이행과 구제수단의 일반규정’(non-performance and remedies in general; Chap. 8)과 ‘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구제수단’(particular remedies for non-performance; Chap. 9)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전자의 주요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의무를

9) CISG상 계약위반과 PICC상 불이행에 관한 규정내용 비교의 상세는 박상기·최준선, “CISG상의 계약위반과 UNIDROIT원칙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연구”, 『부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2; 김동석, “국제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1988를 참조.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불이행이 장애로 인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¹⁰⁾ 불이행을 당한 당사자는 개별적 구제수단 중 어느 것이라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불이행을 야기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구제수단은 병존할 수 있고, 여타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중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PICC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불이행 당사자의 이행결과가 불균형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불이행 당사자에 의한 추완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약내용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에의 부적합을 이유로 상대방이 변제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변제를 제공한 당사자는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이 중대한 불이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계약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PECL Art. 8:104).

PECL상 ‘이행보장’(assurance of performance)과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하는 통지’(notice fixing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에 관한 규정은 공히 PICC와 동일하다. 다만 PICC에서는 이행지체가 중대하지 않고 불이행을 당한 당사자가 상당기간의 추가기간을 허용하는 통지를 제공한 경우 불이행된 채무가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 중 경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때는 당해 계약을 종료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PECL과 구별되는 특징이다(PICC Art. 7.1.5(4)).

한편 PECL의 ‘장애에 의한 면책’(excuse due to an impediment) 규정(PECL Art. 8:108)은 PICC에 있어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PICC Art. 7.1.6~ 7.1.7)에 상당한다. 특히 PICC에서는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제와 이행보류 및 채권액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부가하고 있다(PICC Art. 7.1.7(4)).

이에 반하여 PECL에서는 별도로 ‘책임의 제한 및 배제약정’(clause limiting or excluding remedies)으로 어떠한 제한이나 배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PECL Art. 8:109).

10)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개별적 구제수단 일체를 원용할 수 있다(PECL Art. 8:101(2), Art. 8:108).

Ⅲ. 계약불이행에 관한 적용사례 분석

1. 이행청구에 관한 판결사례

1) 사건명

「Oberster Gerichtshof : Austria」, 「7 Ob301 / 01t」, “Unknown”, 2002.

2) 쟁점

매도인의 계약부적합 치유가 약정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하자있는 물품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적용법규

CISG Art. 6, Art. 38, Art. 39.

4) 사실관계

독일에 영업소가 소재한 매도인과 오스트리아에 영업소가 소재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특별한 주문사양이 포함된 냉방기계(cooling system)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의하면 기계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 있는 매수인의 영업소에 인도된 후 최종적으로는 독일에 건설될 수처리공장(water plant)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계약내용 중 중요한 것은 공장주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냉방기계의 인도와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매수인과 최종 고객의 대리인간의 계약은 특정한 인도기일을 정하고 있다는 것, 이행지체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매도인은 청약에서 송장의 이면에 기재된 표준약관(standard terms)을 명시적으로 원용하고 있었고, 매수인은 매도인과 기존의 상거래 관계로 인하여 이미 표준약관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당해 표준약관에 의하면 매수인은 인도 후 즉시 물품을 검사할 의무와 인도일로부터 8일 이내에 명백한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고, 부적합을 치유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물을 인도할 것인지는 매도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제척기간은 12개월이며, 간접손해는 배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행장소와 분쟁해결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고,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냉방기계는 독일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바로 인도되어야 했고, 그곳에서 매수인은 간단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매수인은 약간의 명백한 하자로서 부식 및 거친 마감을 발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기계를 설치하였다.

기계설치 완료 후 추가적인 기술적 하자로서 저성능 및 고소음이 발견되었고 매수인은 마찬가지로 즉시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지연된 통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저성능 및 고소음에 대한 하자보완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수리되지 않자 급기야 매수인과 대리인은 대체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당해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은 자기의 계산과 비용으로 재차 수리를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매수인과 건설시공자는 매수인이 후에 대체기계를 제공하기로 하고, 하자있는 기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매도인은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달리 통보받지도 못하였다. 약정된 날에 매수인이 기계를 개조하여 다시 설치하였는 바,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당사자간의 다른 거래에 관한 송장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은 그 지급을 거절하고, 송장에 대하여 지급할 채무를 하자있는 냉방기계의 인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5) 판결요지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선택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CISG는 당해 국가의 법체계의 일부이므로 이것이 묵시적으로 CISG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CISG Art. 6). 곧 매도인이 청약에서 명시적으로 표준약관을 원용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기존 거래로부터 이미 표준약관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준약관은 매수인을 당연히 구속한다.

계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이, 계약국의 국내법 체계의 일부인 CISG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매수인의 냉방기계 구매로 인한 손해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배상청구액은 제한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하자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매도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건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후 즉시 검사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하자에 관하여는 8일의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고, 이후에 발견되는 잠재적 하자에 관한

통지기간은 발견 후 상당한 기간이다(CISG Art. 38-39).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은 각 사건의 상황, 특히 매수인 회사의 규모와 구조, 검사될 물품의 성질과 수량, 검사에 드는 노력, 선택된 법적 구제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 매수인이 너무 늦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통지를 받은 후 매수인에게 특히 즉시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하자를 보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항변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매수인의 통지가 하자의 종류를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였다는 매도인의 항변은 배척한다. 물품의 계약부적합은 매도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기술되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은 과도하게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요건마저도 각 경우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인 바, 특히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CISG Art. 39(2)).

6) 논점 및 평가

이 사건은 당사자가 냉방기계의 부적합을 치유하기 위해 물품을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물을 인도할 것인지는 매도인이 선택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1차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수리되지 않아 매수인이 대체물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2차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있는 기계의 인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2. 대금감액청구에 관한 판결사례

1) 사건명

「Amtsgericht Nordhorn : Germany」, 『3 C 75/94』, “Unknown”, 1994.

2) 쟁점

매수인이 대금감액으로서 하자있는 물품대금 전부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3) 적용법규

CISG Art. 4(a), Art. 48(2)~(3), Art. 49, Art. 62, Art. 81.

4) 사실관계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독일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

물을 신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확정이 아닌 개략의 인도’(approximate delivery without commitment)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있어 ‘휴가철 전, 늦지 않게’(before holidays, not later)라고 수기로 된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휴가철 전이라고 함은 통상 8월 전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인도분 물품이 1993년 8월 5일에 매수인에게 송부되었다. 매수인은 1993년 11월 30일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두 번째 인도분 물품이 1993년 9월 24일에 송부되었다. 1993년 9월 28일 매수인은 팩스로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잔액과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매도인은 기존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난 해에 3번에 걸쳐 일부 부적합을 통지한 후 유보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매수인은 계약에 인도를 위한 확정기일이 정해져 있고, 매도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자신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곧 지난해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시기에 늦은 부적합의 통지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부적합한 물품의 반환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물품의 대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5) 판결요지

매도인은 대금잔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CISG Art. 62). 두 번의 물품인도분은 실제로 합의된 기일이 지난 후 인도되었으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CISG Art. 49). 아울러 매수인의 해제 선언은 계약서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최고한 후, 그리고 매도인이 그러한 최고를 받고 계약을 이행함이 없이 15일의 영업일이 도과된 후에만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계약서 이면에 인쇄된 매도인의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은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독일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인 이탈리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CISG Art. 4(a)).

이탈리아법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유효하다. 매수인이 계약에서 약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제를 선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의 해제선언은 효력이 없다. 곧 ‘휴가철 전, 늦지 않게’라고 한 것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인도기일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확정인도기일을 합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은 그러한 의미에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인도기일이 확정기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수인은 1993년 8월 5일 첫 번째 인도분을 인수하였고, 매도인이 통지한 두 번째 인도분의 인도일자인 1993년 9월 10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도인에게 15일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1993년 9월 10일까지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CISG Art. 48(2),(3)).

1993년 9월 10일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없다. 또한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상당기간 내에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인도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CISG Art. 49(2)(a)).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CISG Art. 81).

지난 해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3번의 부적합 통지 중 하나만이 유효하다. 이 사건에 있어 매도인은 통지가 인도로부터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 매수인은 하자있는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송하였고, 이는 유효한 부적합 선언에 해당한다. 유효한 부적합 통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대금감액으로서 하자있는 물품의 대금전부를 유보할 수 있다(CISG Art. 50).

매도인이 유효하게 표준약관에 규정된 6개월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였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두 부적합에 관한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지난 해 매매에 관해 매도인은 유효하게 통지된 부적합 청구 이외에 매수인이 유보한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6) 논점 및 평가

이 판결은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권의 행사로서 하자있는 물품의 대금 전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판시한 사례이다.

3. 손해배상청구와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에 대한 판정사례

1) 사건명

「Schiedsgericht der Handelskammer-Hamburg, Germany」 『Unknown』, “Unknown”, 1996.

2) 쟁점

계약해제의 선언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3) 적용법규

CISG Art. 8, Art. 45, Art. 47, Art. 49, Art. 53, Art. 74.

4) 사실관계

독일의 매수인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2개의 홍콩회사인 매도인과 2개의 독립된,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이 단기간의 통지로 물품이 필요한 사정을 알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시키는 때 경우마다 달랐다. 대금은 인도일로부터 90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실체는 각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지급(advanced payment)하거나 물품인도시에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은 한 매도인에게 10,000개 물품을 주문하였다.

매도인은 대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국 공급자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지하였고, 매수인이 미지급된 모든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한, 물품인도를 거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매도인은 이 같은 매수인의 거절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중재신청을 개시하였고,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선언과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다툼이 있는 개별 매매계약의 위반과 기본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5) 판정요지

매도인이 기존 인도분으로 인한 모든 미지급 채무를 변제받지 않고 인도를 거절하였으므로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Art. 49(1)(b), Art. 47(1)). 이 같은 요구는 성질상 인도가 기존의 계약하에서 지급되어야 할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의 조건과 양립하지 아니한다(CISG Art. 8). 아울러 계약해제를 선언한 후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CISG Art. 49(2) 및 관련규정으로서는 CISG Art. 45(2), Art. 74). 또한 매수인에게 예견가능한 손실이라 할 수 있는, 즉 매수인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매수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도인의 기본계약 위반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도인의 계약위반의 결과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행위를 고려하여야 하는 바,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논점 및 평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기존 인도분에 대한 모든 미지급 채무를 변제받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를 거절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인도가 기존의 계약하에서 지급되어야 할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를 선언한 후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4.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사례

1) 사건명

「Landgericht Ellwangen : Germany」, 『1 KfHO32/95』, “Unknown”, 1995.

2) 쟁점

계약상 장래 분할이행분에 관해 계약해제의 선언을 위한 요건

3) 적용법규

CISG Art. 25, Art. 35, Art. 73, Art. 82.

4) 참조조문

PICC Art. 7.3.1.

5) 사실관계

스페인의 매도인과 독일의 매수인은 고추향료(paprika)를 계약의 목적물로 분할이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수인은 초도[1차] 이행분에 대한 대금을 기지급한 상태였다.

이후 매도인의 2차 분할이행분이 인도된 시점에서 매수인은 독일향료협회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된 금번[2차] 고추향료는 독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첨가물 허용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금번 인도된 고추향료의 명세에 의하여 인도 이후 판명된 사실이었다.

매수인은 즉시 매도인에게 당해 공문을 근거로 독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기준에 비추어 기 인도된 물품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사실과 이에 매수인과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이 수용할 수 있는 부가기간 내에 대체품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이 같은 매수인의 통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합의된 부가기간이 지나도록 대체품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기 이행된 인도분(2차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매도인 또한 반소를 통해 기 이행된 인도분에 대한 매도인의 대금지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6) 판결요지

양당사자가 소재한 국가가 CISG 체결국이므로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된다. 그간 양당사자의 상업적 매매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양자 모두 묵시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독일 국내법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없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수량·품질 및 물품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CISG Art. 35(1)). 아울러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당해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수인과 합의한 부가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불이행에 상관없이 이 경우 매도인은 묵시적 동의에 비추어 2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CISG Art. 25).

그렇지만 매수인의 주장에 대하여, 매수인이 기 수령한 물품의 상태[1차]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할 것이나(CISG Art. 8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매수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매각되었거나 또는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소비되었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CISG Art. 82(2))을 적용할 수 없다.

7) 논점 및 평가

이 판결은 계약의 목적물의 분할이행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래의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은 장래의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5. 계약해제권의 제한에 관한 판결사례

1) 사건명

「Oberster Gerichtshof : Austria」, 「8 Ob 22/00v」, “Unknown”, 2000.

2) 쟁점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3) 적용법규

CISG Art. 4, Art. 49.

4) 사실관계

독일의 매도인과 오스트리아의 매수인은 기존의 상거래에서와 같이 ‘검은색 돌로 만들어진 묘지석’(gravestones made of dark stone)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도인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물품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치유하거나, 물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대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계약의 목적물 인도 후 몇 주 뒤 묘지석에서 흰 자국이 발견되었다. 이 자국은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인도시에는 발견될 수 없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고 매도인은 묘지석을 검사하기 위해 검수인을 파견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묘지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의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아울러 표준주문서의 조건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환어음이 인수거절로 부도가 나자 매도인은 매수인과 협상을 계속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유보할 권

리가 없고, 더욱이 물품이 적합하고 적어도 묘지석의 하자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곧 매수인은 표준약관의 유효성을 다투고 동시에 본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5) 판결요지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CISG Art. 49 (1)), 당사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매수인의 해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유효하여야 하며(CISG Art. 4), 또한 준거법인 국내법에 의하여 유효한 경우에도 국내법의 규칙이 협약의 기본원칙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도인이 부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중국적 구매수단으로서 계약해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CISG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계약해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준거법인 독일법에 의하면 대금지급유보권의 제한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은 유효하다.

대금지급유보권의 제한이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유보권의 제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ISG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하지 못하거나 대체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감액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6) 논점 및 평가

이 판례는 두 가지 법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매수인은 CISG에서 인정되는 계약해제권을 보유하나, 당사자는 이에 관한 CISG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준거법인 국내법과 CISG의 기본원칙 하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유보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면 매수인은 물품의 계약부적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하지 못하거나 대체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금감액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6. 중대한 계약위반의 입증에 관한 판결사례

1) 사건명

「Cour d'Appel, Mons : Belgium」, 『R.G. 1999/242』, “Unknown”, 2001.

2) 쟁점

중대한 계약위반의 입증책임

3) 적용법규

CISG Art. 35, Art. 49.

4) 사실관계

벨기에 매도인은 프랑스 매수인으로부터 1,600개의 ‘금속배지 신분증’(identification metal badges)을 구매하였다. 배지는 1997년 3월 13일에 인도되었다. 4월 28일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5월 5일 매수인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부 배지에는 표면에 포말이 있고 4-5개는 부러졌고 표면에 이름이 밝은 색상으로 쓰여져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매도인은 즉시 5월 5일자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검사를 위해 물품의 반송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하자있는 배지 교환을 제안하였다. 매수인은 응답하지 않았고 검사나 교환을 위해 물품을 반송하지도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판결요지

매수인은 주장하는 하자에 기한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입증하여야 한다(CISG Art. 35). 매수인은 주장한 물품의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반송하지 않았고, 최종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음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수인은 상당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았다(CISG Art. 39).

계약해제에 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 측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입증하지 못하였다(CISG Art. 49). 또한 항소인은 항소시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해제한 것이므로 해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CISG Art. 49(2)(b)(i)).

6) 논점 및 평가

CISG에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그 계약위반이 중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CISG Art. 25). 일반적으로 확정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인도시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한다. 또한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후에 소송에서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었다면, 그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III. 결 론

PICC는 CISG상의 계약위반을 불이행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은 묵시적 의무에 한하여 계약의 성질과 목적·당사자 간 확립된 관행과 관습·신의칙과 공정거래·합리성 등의 고려에 두고 있다. PICC는 이행에 대한 권리에 하자있는 이행의 보수와 대체 또는 기타 보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에 기한 의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순차적으로 불완전이행치유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인정되는데, CISG와는 달리 대체물급부청구의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비금전적 손해에 있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PECL은 PICC와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을 불이행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불이행은 면책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이행지체 및 하자있는 이행이나 계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CISG 및 PICC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합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통지의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중대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PICC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중대한 불이행의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써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불이행 당사자가 그 준비 또는 이행의 결과로서 불균형적 손실을 입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매수인에 대한 권리의 구제수단은 순차적으로 추완청구권·대금감액권·손해배상권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의 계약부적합보완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약위반의 효과 및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PICC는 CISG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중대한 불이행의 판단기준이 상세하고, 면책의 주장이 보다 명료하며, 손해배상범위에 관해 예견가능성을 포함하여 손해의 확실성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불이행의 책임체제와 관련하여 PICC와 PECL은 유사한 법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PICC의 경우 불이행 당사자의 추완권을 PECL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상세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있어 CISG는 쌍무계약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PICC 및 PECL에서는 편무계약에 대해서도 법정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해 CISG의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의 내용은 일부 단서를 두어,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PICC에서는 CISG에 비하여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이행이 면책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일부 제한요건을 두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PICC내에서의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ECL에서 중대한 불이행의 인정요건은 채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계약의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 당해 불이행에 기인하여 계약당사자의 실질적 기대가 박탈된 경우, 불이행이 고의적이고 또한 불이행 당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장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두고 있다. PECL에 있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의 내용은 PICC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다. 예컨대 급부의 이행비용 증가시 급부의 부담이 현저히 과중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에 반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또는 교섭을 파기하는 경우 그 결과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 것 등이 PICC와의 차이점이다.

참고문헌

강병창, 『국제통일매매법』, 서울: 형설출판사, 2000.

김동식, “국제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1988.

김상용, 『비교계약법』, 서울: 법영사, 2002.

- 박상기 · 최준선, “CISG상의 계약위반과 UNIDROIT원칙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2
- 박영복, “계약채결단계의 법규범화”, 『외법논집』, 제10집, 2001.
- 박정기, “유니드로와(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 계약책임”, 『상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1999, III.
- 송양호, “유럽계약법원칙과 한국법”, 『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2.
- 오원석 역, 『UN 통일매매법』, 서울: 삼영사, 2004.
- 허해관 · 한병완,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면책규칙에 관한 일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2005.
- Bonell, M. J.,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Similar Rules for the Same Purposes?” *Uniform Law Review*, 1996.
- Eiselen, S., “Comparison with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Art. 71-72),”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 Farnsworth, E. A., *Farnsworth on Contracts*, 2nd ed., Aspen Pub., 1998.
- Honnold, J. O.,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l, 1999.
- Hossam El-Saghir, “Comparison with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Art. 25),”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 Kritzer, A.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Kluwer Law Int'l, 1989.
- Lando, O.,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art II,”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002.
- _____. Beale, H.,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erformance, Non-performance and Remedies*, Kluwer Law Int'l, 1995.
- Riedl, R., *The Work of the Lando-Commission from an Alternative Viewpoint*, Kluwer Law Int'l, 2000.
- Schlechtriem, P.,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Press, 1998.
-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f Int'l Commercial Contracts*,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Conditions of Non-Performance and Legal Cases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CISG, PICC and PECL -

Chong-Seok Shim
Min-Kyo Seo

The CISG uses the term fundamental breach, in various sett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is a milestone in its remedial provisions. Its most important role is that it constitutes the usual precondition for the contract to be avoided(Art. 49, 51, 64, 72, 73). In addition, wher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 fundamental breach can give rise to a requirement to deliver substitute goods. Furthermore,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leaves the buyer with all of his remedies intact, despite the risk having passed to him(Art. 70). Basically, PECL, PICC generally follows CISG. it was similar to all the regulation's platform though the terms and content sometimes differ. For example regarding to the non-performance and remedi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that is the PECL, PICC term analogous to breach of contract as used in the CISG. Furthermore the PECL, PICC used fundamental non-performance referred to in PECL Art. 8:103, PICC Art. 7.1.1 correspond generally to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referred to in CISG Art. 25. The main significance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any systems, is to empower the aggrieved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need for uniformity and harmony in int'l commercial contracts can be expected to lead to growth of int'l commerce subject to the CISG, PICC, and PECL.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editorial remarks will provide guidance to improve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tractual party of different countries in this respect. In the case of CISG, main articles for terminate of contract, Art. 25, 49, 51, 72, 64, 79 and so forth. To sum up these article,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is fundamental if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

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In the other hand PICC, are Art. 6.2.1, 6.2.2, 7.1.1, 7.1.3, 7.3.1, 7.3.3 and so on. Not only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either because the cost of a party's performance has increased or because the value of the performance a party receives has diminished but in the case of hardship the disadvantaged party is entitled to request renegotiations. the request shall be made without undue delay and shall indic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based. Finally PECL are regulatory articles, that is to say, Art. 6:111, 8:103, 8:106, 9:301 to summarize of these issues,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fundamental to the contract if strict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is of the essence of the contract or the non-performance substantially deprives the aggrieved party of what it wa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unless the other party did not foresee and could not reasonably have foreseen that result or the non-performance is intentional and gives the aggrieved party reason to believe that it cannot rely on the other party's future performance.

Key Words: CISG, PICC, PECL, Breach Of Contract, Non-Performance, Remedies